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91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김현정
김문수 · 양부남 · 소병훈
정동영 · 김동아 · 박지원
안도걸 · 김용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중동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누구나 예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합니다.

현행법은 묻지마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살인이나 상해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할 뿐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무관계성, 행위의 비전형성, 동기의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치며 실질적인 예방이나 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14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4(이상동기에 의한 살인·폭행 등의 가중처벌) 연관관계 없는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의 죄
2.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제3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62조의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14(이상동기에 의한 살인 · 폭행 등의 가중처벌) 연관관계 없는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u>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의 죄 2.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 · 제3항, 제258조제1항 ·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3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62조의 죄